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('09.12.17)의 후속조치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과 임용자격 기준,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,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(안 제4조제3항)
- 나.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마련(안 제5조제2항)
- 다.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, 이수기회 부여(안 제8조의2)
- 라.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(안 제12조)
- 마.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(안 제12조의2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

나. 기 타 :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통보
[경상북도 자치행정과-20518호(2010.10.10.)]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1급내지 9급상당”을 “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”으로, “자는 당해”를 “사람은 해당”으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임용절차 등)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비서관 및 비서

2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(예: 초빙하는 경우)

제6조 중 “연령”을 “최저연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교육훈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

제9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”을 “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감소등에 의하여”를 “감소 등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의3제1항 중 “휴직중인”을 “휴직 중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에 따라”로, “30일이내”를 “30일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반영할 수 있다”를 “반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.

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상당계급	임 용 자 격
3급 상당 이상	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4급 상당	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5급 상당	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6급 상당	1.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
상당계급	임 용 자 격
7급 상당	1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8급 상당	1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9급 상당	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.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※ 비 고 ○ 별정직 5급 상당 과장직위(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(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에는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, 비서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○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공무원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4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략)	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 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 .
③이 조례에 <u>의하여</u>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	③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<u>각호</u> 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	제4조(임용자격) ①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.
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<u>자는 당해</u> 직위	② <u>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</u> ----- ----- <u>사람은 해당</u> -

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
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
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
다.

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
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
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절차등) 별정직공무원
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
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
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
다.

<신 설>

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별정

사람을 -----.

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
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
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
따른다.

제5조(임용절차 등) ① 별정직공
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
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
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
준용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
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
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
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
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
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
다.

1. 비서관 및 비서

2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
불가피한 경우(예: 초빙하는
경우)

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-----

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임
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(근무상한연령) ①별정직공
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
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
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
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<신설>

제9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
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
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제10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
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
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

----- 최저연령-

-----.

제8조(근무상한연령) ① -----

--. 다만, 시장 및 시의회의장
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교육훈련) ① 지방자치
단체의 장은 「지방공무원 교육
훈련법」에 따라 지방별정직공
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
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
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

제9조(당연퇴직) -----
----- 각 호-----
-----.

제10조(직권면직) -----
----- 각 호의 어
느 하나-----

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구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

2. 직제·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
3.·4. (생략)

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

-----.

1. -----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-----

2. -----
----- 감소 등에 따라 ---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휴직 중인

-----.

② 제11조에 따라 -----

----- 30일 이내 -----

-----.

③ 제2항에 따라 -----
-----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-----

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
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
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
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
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
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반영하여야 한
다.

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 ① 임용
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
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
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
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
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
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
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
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
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
한다.

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
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
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
간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
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
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관련법령

◎ 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10. 12. 9] [법률 제10343호, 2010. 6. 8, 일부개정]

제2조 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·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자치경찰 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기능직공무원: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
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

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

4. 고용직공무원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